

개 요

1. 성인지 통계의 필요성 및 추진근거
2. 성인지 통계 작성방법 및 내용

1. 성인지 통계의 필요성 및 추진근거

가. 성인지 통계의 필요성

- 성인지 통계(gender responsive statistics)란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황과 문제 등을 반영하고자 제시한 통계자료 일체를 의미하며, 남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개선하고자 만든 통계를 의미함.¹⁾
-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음. 즉 197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 제1차 세계여성대회는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05년 UN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도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성인지 통계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0 UN유립경제위원회와 세계은행연구원도 성인지 통계 생산과 활용을 위한 매뉴얼(Developing Gender Statistics)에서 성인지 통계 개발과 정책 관련성을 강조함.
- 성인지 통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간단한 자료이자, 남성과 여성이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성인지 통계는 또한 성 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과 함께 성 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함.

나. 성인지 통계집 발간 목적

- 경기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가족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경기도만의 가족 여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함.
-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우리나라도 여성발전기본법(제13조 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정을 통해 성별구분 통계 작성을 의무화시켰으며, 2013년 발효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도 성별을 따로 구분한 성별 통계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가족 여성의 삶을 축약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경기가족여성 통계」를 2000년부터 3년 단위로 4회에 걸쳐 발간하였고, 2012년 재발간 시점에서 준비하게 되었음.
-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는 경기도 가족 및 여성의 삶의 변화와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일부 주요 지표의 경우 타 시도지역과 비교함으로써 경기도 가족 및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단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축적이 그 목적이 있음.

다. 성인지 통계의 추진근거

1) 관련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여성발전기본법
 -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통계법
 -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1)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 일부는 「2012 안양시 성인지 통계」(2012)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 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4.27.]

2) 관련 정책

- 제3차 여성정책기본법(2008-2012)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성별 통계 확립
 - 국가생산통계 중 모든 인적통계 성별 구분 : 행정기관이 자체 생산하는 행정통계 성별 구분
 - 통계의 생산·활용 기반 정비 : 통계전담조직·인력확충,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별 통계 협력체계 구축
 - 성별 통계 생산 절차 개선 : 통계작성승인 심사지침에 성별통계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통계작성기관에 배포 및 교육, 국가통계품질 진단 시 성별통계에 대한 점검 실시
 - 통계담당자에 대한 성별통계 교육의 내실화 : 통계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시행시 성별통계 교육내용 포함,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성별통계 작성에 대한 통계 담당자들의 인식 확산.

라. 지역 성인지 통계 생산의 한계

○ 성별통계 부족

- 본 통계집은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을 주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별통계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별통계 생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향상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공신력 있는 공식 통계 자료원에도 성별통계 생산 및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학기술, 문화생활, 범죄 발생 및 피해 등 다양한 지표개발과 포괄적 통계 구축이 미비함.

○ 지역통계 자료원의 한계

- 본 통계집에 수록될 만한 중요한 국가 조사 통계 및 행정 통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 조사 통계에서 성별 구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통계집에 수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일례로 「전국가족실태조사」, 「전국보육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 「정보화실태조사」,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등의 자료는 인구, 가족, 보육, 경제활동, 문화, 복지 분야 등의 중요한 통계 자료이나, 성별 구분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공개 자료의 한계

- 지역 단위 성별통계 구성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료 입수의 한계로 본 통계집에 수록하지 못하는 통계들도 있음. 일례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자료의 성격상 개인 단위 수준의 세부적인 지역 통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성별 통계 제시에 제약이 있음.

2. 성인지 통계 작성 방법 및 내용

가. 성인지 통계 작성 기준 및 생산방향

- 남녀 구분 및 남녀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통계는 남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성인지 통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제시함.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통계의 경우에도 가끔 특정 집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교육수준, 혼인상태 같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자료 형태로 제시함.
-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
 - 남녀의 평균수명, 고용지위, 혼인상태 등과 같이 개인적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 제시.
 - 남녀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정치참여, 환경 및 안전성 등과 같이 사회적 생활 환경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 제시.
- 성인지 통계의 기획
 - 성별 구분 없는 통계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내용이나 수단, 정책방식 등에서 어느 특정 성(남성 혹은 여성)에 차별적 효과를 누적으로 초래함으로써 정책의 내용이나 수단, 집행방식 등에서 차별적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
 - 최근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획이 추진되고 있음.
 - 여성과 남성이 겪는 상이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나. 성인지 통계 작성 과정 및 방법

1) 성인지 통계 문헌 검토 및 발간물 지표 분석

- 남성과 여성, 그리고 가족의 삶의 현황 및 방식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성인지 통계 지표와 관련된 기존 문헌 검토.
- 본 연구원이 발간한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 및 「2012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성인지 통계」,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등 국내 선행 성인지 통계 자료집 및 지표체계를 분석하여 경기도 성인지 통계자료집을 수정 보완하였음. 즉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 원자료의 변경에 따라 일부 지표의 경우 삭제되거나 성별 구분 없이 제시하였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지표로 포함시켰음.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서 부부의 산업 및 직업별 취업가구 및 성별 임금근로자 수 및 입직과 이직율 지표가 삭제되었고, 산업별 근로일수 및 월평균 임금 등은 성별 구분 없이 합계 지표로 변경되었음. 복지 영역에서 성별 아동상당 발생 및 배정 등에 대한 지표가 삭제되고, 안전 및 환경 영역에서도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하여 안전의식 수준 평가, 주거 환경 만족도, 환경문제 불안감 등의 많은 지표가 삭제되었음. 반면 2009년 수집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국제결혼이주자의 가구, 혼인상태, 보육, 학령기 자녀 교육, 경제활동, 복지 및 주거 환경 평가 등 여러 지표를 추가함.

2) 국내 통계자료 수집 및 재분석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통계청 KOSIS 데이터분석, 「경기여성가족백서」, 「교육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연보 재분석.
- 「사회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전국다문화실태조사」 등 통계 원자료를 수집하여 경기도민의 경제활동상태, 가구특성, 일상생활의 특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성별통계를 다시 분석함.

3) 전문가 자문회의

- 가족 및 여성 통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통계지표 발굴 및 수정함.

다. 통계작성 내용

1) 경기도 성인지 통계지표 수정 보완

- 경기도 및 전국 성인지 통계 자료 및 국내 가족 및 여성 관련 통계발간 간행물을 검토하여 경기도 가족 및 여성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수정함.
-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는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를 바탕으로 「2011 경기도 지역별 성인지 통계」, 「2011 한국의 성인지 통계」 등을 검토한 후 보완함.

2) 경기도 성인지 통계 작성 현황

-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는 <표 1-1>과 같이 302개 지표로 구성함. 즉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의 264개 지표에 비해 경기도 및 전국 가족 및 여성 관련 통계 간행물을 검토하여 경기도 가족 및 여성 통계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수정함.
-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및 가구,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미디어, 안전 및 환경 등 총 10개 분야, 33개 영역, 274개 통계 지표와 시도별 비교 28개 지표 등으로 구성하였음.
- 각 영역별 성 통계 지표는 성별을 기본 변수로 하되, 추가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주요 변수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성별 통계 제시.
-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는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통계자료의 경우 2012년도 자료까지 포함하였음.
-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와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의 부분별 통계지표를 비교하면 아래 <표 1-1>과 같음.

- 다음은 본 통계의 각 부문별 관심영역과 통계표를 기 발간된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와 비교하여 제시한 것임.

<표 1-1>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와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의 통계지표 비교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		
부문	관심영역	통계표(개)	부문	관심영역	통계표(개)
인구	총인구	2	인구	총인구	2
	인구구성	9		인구구성	10
	출생 및 사망	9		출생 및 사망	9
	인구이동	1		인구이동	1
가구 및 가족	가구구성	8	가구 및 가족	가구구성	11
	가족형성	13		가족형성	14
	가구경제	4		가구경제	4
	가족생활	4		가족생활	5
	가족관	7		가족관	6
보육	보육이동	3	보육	보육이동	3
	보육시설	6		보육시설	7
	보육지원	3		보육지원	4
교육	교육기회	13	교육	교육기회	16
	교육여건	8		교육여건	8
	교육효과	7		교육효과	7
경제활동	고용	18	경제활동	고용	19
	근로여건	13		근로여건	10
	노동조합	2		노동조합	2
건강	건강상태 및 행태	9	건강	건강상태 및 행태	16
	출산 질병 사망	13		출산·질병·사망	12
	의료 이용	2		의료 이용	4
	의료 시설	4		의료 시설	4

2008 경기가족여성통계			2012 경기도 성인지 통계		
부 문	관심영역	통계표(개)	부 문	관심영역	통계표(개)
복지	사회보험	13	복지	사회보험	14
	공공부조	3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30		사회복지서비스	31
정치 및 사회참여	정치참여	4	정치 및 사회참여	정치참여	5
	행정참여	8		행정참여	7
	사회참여	6		사회참여	9
문화 및 정보미디어	문화 및 여가활동	11	문화 및 정보미디어	문화 및 여가활동	8
	미디어 이용	3		정보미디어 이용	3
	정보화	3			
안전 및 환경	안전인식	10	안전 및 환경	안전인식	8
	안전실태	6		안전실태	6
	환경	9		환경	6
-			시·도 비교	인구	7
				가족	5
				보육	2
				교육	3
				경제활동	7
				보건	1
				복지	1
				정치 및 사회참여	1
				문화 및 정보	1
총계		264	총계		302